(재)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분과위원회 등의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에 두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) 재단에 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위원의 임기)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원 임명) 분과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제5조(위원의 사임) 재단의 위원이 본 재단을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위원의 해임) 위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제명을 건의하여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- 1. 본 재단의 취지에 어긋난 행동과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 - 2. 본 재단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대행) 위원장(이사장)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지명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 직원이 된다.
 -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사항 및 의사록의 정리 등을 담당하고 사무집행기 관에 보관 한다.
- 제9조(의사록) ①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[별지 제1호 서식]

을 작성하여, 위원장, 센터장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사무집행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사무처리) ①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사무집행기관에서 담당한다.
 - ② 사무집행기관은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는 개최일시, 장소 및 의결 사항을 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내규)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(전면표지)

제 차 ○○○ 위원회 의사록

20 년 월 일

(재)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

제	차	$\bigcirc\bigcirc\bigcirc$	위원회	의사록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

제 안 자									
일 시	20	년	월	일 (시	분	_	시	분)
장 소									
참 석 자									
결 석 자									
배 석 자									

	부의 안건	회의 결과		
번호	건명	외의 선택		

(내용)

20 년 월 일

○○○이사장

(인)

센 터 장

(인)